
지방공기업 통합공시기준

2009. 11



지방재정세제국
회계공기업과

I 기준 수립 개요

1 배 경

-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('09.9.21)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통합공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 - ※ 행정안전부 훈령예규지침 정비계획('08.6.5, 규제개혁법무담당관-4975)에 의한 기존 「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운용규정」의 폐지('08.6.30)
- 지방공기업 통합공시의 세부 항목 및 방법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, 공기업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경영개선에 기여

< 「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」 운영 현황 >

- 「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(클린아이시스템)」 구축('07.12)
- 공시 대상 : 지방공사·공단(직영기업 제외)
- 공시 항목 : 임원현황, 재무제표 등 30개 항목
- 문제점
 - 통합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 불비로 통합공시에 대한 구속력 미흡
→ 공시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 미흡 및 외부통제기제로서의 역할 제한
- 주요 개선 사항
 - 지방공사·공단 외 직영기업까지 확대 적용
 - 통합공시항목 확대
 - 노동조합 현황, 복리후생비, 장·단기차입금 현황, 경영진단결과 및 이행상황 등
 -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제 수단 마련
 -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부과, 불성실공시기관 지정·공개, 경영평가 반영 등

② 근거

○ 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의2

-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(법 제46조제3항)
-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세부항목 및 절차(통합공시기준)을 정하여 지방공기업에 통보하도록 규정(영 제44조의2)

③ 적용범위

- 지방공기업법 제5조, 제49조,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「지방직영기업」, 「지방공사」 또는 「지방공단」에 대하여 적용

④ 시행일 및 적용방법

- 통합공시기준 **통보일로부터 14일 이후** 적용(시행령 제44조의2제3항)

※ 다만, 불성실공시 벌점부과에 대한 사항은 '10.1.1일부터 적용

1. 일반기준

① 적용대상

- 지방공기업법 제5조, 제46조 및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「지방직영기업」, 「지방공사·공단」의 경영정보에 대해 통합 공시함

② 통합공시의 방법

-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「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(이하 “클린아이시스템)」을 통하여 공시함

<클린아이시스템>

- 인터넷 주소 : <http://www.cleaneye.go.kr>

③ 자료공시의 원칙

- 공시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
- 다만,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

*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

2. 세부 공시기준

① 공시대상 세부항목

- 통합공시의 세부항목 “별표” 참고

② 통합공시 매뉴얼

-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지방공기업에 통보함

③ 자료공시의 시점

- 통합경영공시 항목은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함
 - * 정기공시 항목 :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일괄 공시
 - * 수시공시 항목 :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·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시

④ 공시의 예외

- 지방공기업은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기밀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사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다만,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비공개 기간을 설정하고 그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공시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공시하여야 함

3. 공시자료의 품질 관리

① 공시책임자의 지정

- 지방공기업은 통합공시업무 담당자,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그 성명, 소속부서, 연락처를 함께 공시함

담당자	공시 총괄부서 실무자
감독자	공시총괄부서의 장
확인자	상임감사(직영기업은 관리자)

- ※ 다만, 상임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 1인이 담당
상임이사가 기관장1인인 경우 기관장

② 공시정보의 이력관리

- 지방공기업은 기 공시된 내용을 수정·삭제하는 경우,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

③ 공시정보의 확인·검증

- 공시항목별 담당자, 감독자 및 확인자는 자료 입력 전후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자료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여야 함
-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기관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·검증할 수 있음

4. 불성실 공시 조치

① 불성실공시 벌점부과

-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“별표 2”에서 정하는 “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”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
- * 동일 사안이 2건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

<불성실공시의 정의>

1. 공시불이행 :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2. 허위공시 :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, 외부기관 (국회, 정부부처 등)으로부터 적발된 경우
3. 공시변경 :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,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

② 불성실공시 사후조치

- 「불성실공시기관」 지정
 -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성실공시에 의한 연간 부과벌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기관주의」 「불성실공시기관」 지정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.
 - 1. 연간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: 「기관주의」 조치
 - 2. 연간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: 「불성실공시기관」 지정

- 「불성실공시기관」 홈페이지 게시
 -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을 「불성실공시기관」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등을 클린아이시스템에 3개월간 게시하고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지방공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

-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
 -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성실공시기관에 대해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<별지 제1호 서식> : 불성실공시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

- 불성실공시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
 - 불성실공시여부에 대하여 경영평가지표를 신설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

5. 향후 조치 사항

- 지방공기업통합공시시스템 정비 완료(행안부, '09.11.15)
 - 공시항목 추가, 공시항목 이력 관리 도입 등 반영
- 지방공기업통합공시기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통보(행안부, '09.11.24)
- 통합공시기준에 따른 공시사항 수정·입력 완료(지방공기업, '09.12.8)
-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추진(행안부, '09.12월~)
 - 공기업간 비교 검색 기능 강화, 핵심정보 요약검색 기능 등 국민 편의성 제고

<별표 1>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세부기준

분야	항 목	공시내용	갱신주기	수시공시 사유발생일
일반현황	1.일반현황	▪ 기관소개, 주요기능 및 역할, 경영목표 및 전략, 기관장 소개, 연혁, 조직기구도, 소재지, 공시책임자	정기(4월)	-
인사조직	2.인원현황	▪ 임원(비상임 포함) ▪ 직원(정원/현원, 정규직/비정규직) ▪ 직종별 인원현황	정기(4월)	-
	3.임원현황	▪ 임원별(비상임 포함) 성명, 직위, 직책, 임기, 주요경력, 선임절차	정기(4월)	-
	4.신규채용 현황	▪ 신규채용 실적 ▪ 여성·장애인·이공계 신규채용 실적	정기(4월)	-
	5.노동조합 현황	▪ 기관별 노동조합 현황	정기(4월)	-
	6.임원연봉	▪ 상임임원 기본연봉, 부가급여, 성과연봉, 기타	정기(4월)	-
인건비	7.기관장 업무추진비	▪ 업무추진비 집행내역	정기(4월)	-
	8.직원 평균임금	▪ 상시종업원의 총급여액 (기본급, 성과급, 제수당, 기타) ▪ 직원 평균근속년수 및 1인당 평균임금	정기(4월)	-
	9.복리후생비	▪ 사내복지기금, 학자금, 주택자금 등	정기(4월)	-
사업성과 /재무현황	10.요약경영정보	▪ 재무상태, 경영성과, 예산·결산현황	정기(4월)	-
	11.예산 및 자금현황	▪ 예산현황 : 사업예산, 자본예산 ▪ 자금결산 : 자금수입, 자금지출, 차기이월	정기(4월)	-
	12.경영성과	▪ 영업수익, 영업비용, 영업외수익비용, 특별손익, 당기순이익	정기(4월)	-
	13.재무현황	▪ 자산, 부채, 자본, 부채비율	정기(4월)	-
	14.주요경영분석지표	▪ 안정성비율, 수익성비율, 활동성비율, 수지비율	정기(4월)	-
	15.장단기차입금 현황	▪ 장기차입금, 단기차입금	정기(4월)	-
	16.자본금 및 주주현황	▪ 주주명, 납입자본금, 지분율	정기(4월)	-
17.타법인 출자현황	▪ 대상법인, 투·출자 금액, 투·출자 목적, 출자형태	정기(4월)	-	

분야	항 목	공시내용	갱신주기	수시공시 사유발생일
감사결과	18.공인회계사 감사의견 등	▪ 감사인명, 감사기간, 감사의견, 감사보고서	정기(4월)	-
	19.외부기관 감사결과	▪ 국회·지방의회 시정·개선 요구사항 ▪ 감사원 시정·개선 요구사항 ▪ 기타외부기관 감사결과	수시	▪ 지적사항 : 문서접수일 ▪ 조치내용 : 조치보고일
	20.내부감사결과	▪ 감사목적, 기간, 지적사항, 조치사항	수시	"
평가·혁신	21.경영평가결과	▪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의한 경영평가 결과	행안부 공시	
	22.사장경영성과 계약	▪ 사장경영성과 계약의 내용 및 이행실적	수시	▪ 성과계약 : 계약체결일 ▪ 이행실적 : 실적보고일
	23.경영혁신과제 추진실적	▪ 경영혁신과제 추진실적	수시	-
	24.경영혁신사례	▪ 인사·노사관리 합리화, 고객만족도 제고, 경영성과 개선 등 혁신 성공사례	수시	-
경영진단	25.경영진단결과	▪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의한 경영진단 결과	수시	▪ 문서접수일
	26.이행명령 추진상황	▪ 경영진단에 따른 이행명령 추진상황	정기 (분기말)	-
규정	27.정관 및 내규	▪ 기관 정관 및 각종 내규	수시	▪ 제·개정일
	28.기관설립·운영조례	▪ 기관설립·운영 조례	수시	▪ 제·개정일
보고서	29.타당성 검토보고서	▪ 기관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,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	수시	▪ 검토보고서 접수일
	30.연구보고서	▪ 기관 운영 및 활동 관련 연구보고서	수시	▪ 연구용역 완료일
기타정보	31.이사회이사록	▪ 회차, 일자, 참석이사, 의안내용, 가결여부 등	수시	▪ 이사회 개최일
	32.고객만족도 조사결과	▪ 고객만족도 조사결과	수시	▪ 조사결과 접수일
	33.고시 및 공고	▪ 기관별 고시 및 공고정보	수시	-
	34.채용정보	▪ 직원 신규채용 정보	수시	-
	35.입찰정보	▪ 기관별 용역 등 공개입찰정보	수시	-
	36.기타	▪ 기관별 소식지, 기관운영여행시설, 법·제도자료 등	수시	-

< 별표 2>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

불성실 유형	위반내용	벌점
1. 공시불이행	· 공시사항을 미공시한 경우 항목별 과점	5점
	·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6개월 경과이후 공시한 경우 항목별 과점	4점
	·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3개월 경과이후 공시한 경우 항목별 과점	3점
	·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개월 경과이후 공시한 경우 항목별 과점	2점
	· 공시사항의 공시시한일부터 1개월 이내 공시한 경우 항목별 과점	1점
2. 허위공시	·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(국회, 정부부처 등)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항목별 과점	5점
3. 공시변경	·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수정 횟수당 과점	1점

< 별지 제1호 서식 >

불성실공시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

행정안전부 귀중

「지방공기업 통합공시기준」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성실
공시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1. 공시의무위반의 원인 및 경위
2. 공시의무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 재정비 등 구체
적인 개선계획의 내용 및 일정

가. 개선계획의 내용

나. 개선 일정

3. 기타사항

년 월 일

○○○○○ 사장(관리자) 인